

서울특별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

(김호평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2800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 : 2021년 10월 15일
발 의 자 : 김호평 의원(1명)
찬 성 자 : 김경우, 김기대, 김인제, 김재형, 김정태, 김제리, 김태수, 문장길, 박기열, 박기재, 박상구, 박순규, 서윤기, 성흠제, 송도호, 송아량, 송재혁, 송정빈, 양민규, 오중석, 이영실, 이정인, 이준형, 임만균, 장상기, 전병주, 전석기, 최 선, 최웅식, 홍성룡, 황규복 의원(31명)

1. 제안이유

- 대규모 유희부지 등의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 시 협상 조직 중 외부전문가에 시민의 대표인 시의원을 포함하여 지역주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지역 전략거점 육성 및 지역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협상조정협의회 외부전문가에 협상대상지의 지역구 시의원을 포함하도록 함(안 제6조제2항제3호).
- 나. 상위법령 제·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 사항 반영(안 제2조제1항제4호, 제9조제1항, 제20조제1항, 제20조제3항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관계법령 :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서울특별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 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제4호 중 “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〕 (이하 ‘영’이라 한다) 제42조의3제2항제12호부터 제15호까지”를 “법 제52조의2제1항 및 제2항”으로 한다.

제6조제2항제3호 중 “위원”을 “위원, 협상대상지의 지역구 시의원”으로 한다.

제9조제1항 중 “영 제25조제2항”을 “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〕 (이하 ‘영’이라 한다) 제25조제2항”으로 한다.

제20조제1항 중 “용도지역의 변경(영 제30조 각 호의 세분 또는 변경 및 제30조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 간의 변경을 포함한다)”을 “법 제36조제1항제1호 각 목 간의 용도지역 변경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영 제42조의3제2항제12호 후단”을 “영 제46조의2제2항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의)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~ 3. (생략)</p> <p>4. “공공기여”란 사전협상에 따른 구체적 개발계획 및 공공기여계획에 따라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(이하 ‘영’이라 한다) 제42조의3제2항제12호부터 제15호까지에서 정하는 시설 또는 비용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.</p>	<p>제2조(정의) ①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----- ----- ----- <u>법 제52조의2 제1항 및 제2항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
<p>제6조(협상조정협의회) ① (생략)</p> <p>② 협상조정협의회는 10명 내외로 구성하며 구성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·2. (생략)</p> <p>3. 외부 전문가 : 서울특별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에 설치·운영 중인 도시계획위원회, 도시·건축공동위원회, 건축위원회 등에 소속된 <u>위원</u> 또는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</p> <p>③ (생략)</p>	<p>제6조(협상조정협의회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-----.</p> <p>1.·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----- ----- ----- ----- <u>위원, 협상대상지의 지역구 시의원</u> ----- -----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

제9조(협상대상지 선정)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라 민간이 제출한 신청서를 검토한 후 협상대상지로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영 제25조제2항에 따른 공동위원회(이하 “공동위원회”라 한다) 자문을 거쳐야 한다.

②·③ (생략)

제20조(공공기여 산정기준) ① 용도지역의 변경(영 제30조 각 호의 세분 또는 변경 및 제30조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 간의 변경을 포함한다)에 따른 공공기여량은 증가되는 용적률의 10분의 6에 상당하는 토지가치의 범위 내에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② (생략)

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한 공공기여의 총량은 영 제42조의3제2항제12호 후단에 따른 토지가치 상승분 범위 내로 한다.

④ (생략)

제9조(협상대상지 선정) ① -----

----- [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] (이하 ‘영’이라 한다) 제25조제2항-----.

②·③ (현행과 같음)

제20조(공공기여 산정기준) ① 별 제36조제1항제1호 각 목 간의 용도지역 변경-----
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 영 제46조의2제2항-----

-----.

④ (현행과 같음)